



일정한 비이민자들을 위한 등록기간 연장
(2003년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)
(출두 그룹 2 유예기간, 연방 관보 통고 - 2003년 1월 16일자)

아프가니스탄 (Afghanistan), 알제리 (Algeria), 바레인 (Bahrain), 에리트리아 (Eritrea), 레바논 (Lebanon), 모로코 (Morocco), 북한 (북조선 - North Korea), 오만 (Oman), 카타르 (Qatar), 소말리아 (Somalia), 튀니지 (Tunisia),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(United Arab Emirates), 및 예멘 (Yemen)의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 (national or citizen)으로서

- 2002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으로 비이민 (nonimmigrant)으로서 입국한 사람이며,
- 1986년 12월 2일 이전에 태어난 남성이고,
- 2002년 11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망명 신청 (apply for asylum)을 하지 않았거나, 첨부된 질문 응답지에 기술된 예외 (exempt)에 해당되지 않으며,
- 미국에 2003년 1월 10일까지 체재하였고,
- 2002년 12월 2일부터 2003년 1월 10일 사이에 이민국 (INS) 사무실에 등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, 그 기간 중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,

다음의 사항들을 수행해야만 한다

1. **2003년 1월 27일부터 2003년 2월 7일** 사이에 정해진 이민국 (INS) 사무실에 출두하여 등록 (사진 촬영, 지문 채취 및 선서 하에서의 면담)을 하여야만 한다.
2. 만약 미국에 그 이후 추가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, 반드시 정해진 이민국 (INS) 사무실에 등록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 10일 이내로 출두 보고하여야 한다. 예를 들어, 2002년 11월 20일에 등록을 한 경우라면, 2003년 11월 10일과 11월 30일 사이에 출두 보고한다.
3. 만약 주소, 직장 또는 학교를 바꾸는 경우에는,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으로 AR-11 SR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.
4.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항구/공항의 이민국 검사관 (INS Inspecting Officer) 앞에 직접 출두하여야 하며 같은 날 해당 항구/공항으로부터 출국하여야만 한다.

위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

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 (out of status)로 간주되어 추방될 수 있다. 체포, 구금 및/또는 미국으로부터의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장래에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다. 정해진 항구/공항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로 출국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, 장래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시도할 때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. 그러한 경우의 결정은 각 건의 정황에 따라 개인 별로 내려지게 될 것이다.